

I-5 |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

주관부서	도시과	담당	도시계획 최대선	전화번호	640-5242		
협조부서	건설과	담당	건설행정 박철균	전화번호	640-5225		
사업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속	사업주체		국	도	시√	기타
완료시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임기내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기후	재원구분		비예산			
이행단계	<input type="checkbox"/> 완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행후 계속추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추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추진	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	진도율	100%

사업개요

- 기 간: 2022~2026년(5년)
- 사업내용: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국공유재산 점사용허가 완화

추진일정

추진내용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도시계획 조례 개정																				
국공유재산 점사용허가 완화																				

추진상황

- 도시계획조례 개정(완료) ----- '22. 10.
 -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용도지역 내 용적률 완화
 (준 주 거지역) 400% 이하 → 500% 이하
 (중심상업지역) 1,200% 이하 → 1,500% 이하
 (일반상업지역) 1,100% 이하 → 1,300% 이하
 (근린상업지역) 700% 이하 → 900% 이하
 - 층수제한 해제: 제2종일반주거지역 25층 이하 삭제
- 국·공유재산 점·사용허가 완화를 위한 효율적 재산 관리(지속추진)
 - 행정재산의 목적 사용, 용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사용수익 허가
 * (국유재산) 270건, (시유재산) 168건
 - 개인 재산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적극 검토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(주택)에 대하여 용도폐지 추진
 * (국유재산) 15건, (시유재산) 28건

향후계획

- 행정재산의 목적 사용, 용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방안 강구, 인·허가 처리
-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생할 수 있는 완화적 인·허가 시행

기대효과

-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규제완화로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등 기대